

大田直轄市火災豫防條例改正案

議案 番號	165
----------	-----

提出年月日：1992. 9. 21

提出者：大田直轄市長

1. 提案理由

消防法이 改正됨에 따라 改正法律이 條例에 委任한 事項의 整理 및 施行中 導出된 不合理한 事項을 改善하려는 것임.

2. 主要骨子

- 가. 어패류 양식장용 난방시설을 위한 위험물 저장·취급기준을 마련함(안 제26조)
- 나. 농예용 및 양식장용 난방시설을 위한 위험물 저장방식에 옥내 저장시설을 추가함(안 제26조 제5항)
- 다. 액체·기체 연료를 장시간 사용하는 주방설비 및 사우나 시설과 위험물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방전 가공기 설비 및 위험물을 임시저장·취급하는 기준등의 안전 기준을 신설함(안 제3조·제8조·제15조·제27조)
- 라. 화재발생 우려가 많은 용제 추출·화학·분쇄·디핑·코팅·사출 및 성형공정설비에 관한 안전관리 기준을 소방대상물 자체에서 마련하여 자체점검시 활용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
- 마. 이 조례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1차에 한하여 시정촉구를 한 후에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 바. 법 제14조에 의한 소방의날 행사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안 제41조)
- 사. 탱크의 누유등으로 인한 화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옥내탱크·옥외탱크·지하탱크는 충수시험을 받은 탱크를 사용토록함(안 제25조 제1항)

- 아. 양벌규정·핵연료 및 아세치렌가스 취급신고·위험물의 유별 공통기준·실내
장식물의 방염처리등은 시행령 및 기술기준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고 선언적 의미와 상식적인 내용도 삭제함.
- 자. 소방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함 (제15조 → 제16조, 제25조 → 제24조)

3. 參 考 事 項

- 가. 改正根據 : 시·도 화재예방 조례 준칙 제정안[예방 02412 - 216('92.6.26)]
- 나. 豫算協議 : 해당없음
- 다. 關聯法規 : 소방법 (제13, 14, 15조 제2항, 16조 2항, 27, 67, 119조)

대전직할시 조례 제 호

대전직할시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화재예방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직할시화재예방조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법 (이하 “ 법 ” 라 한다) 제13조 규정에 의한 열을 발생하거나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 및 기구의 위치, 구조, 관리의 기준, 법 제14조의 소방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법 제15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한 임시 저장취급 장소, 법 제16조 제2항의 농예용 또는 어패류 양식장용 난방시설을 위한 위험물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소량위험물등의 저장취급 기준, 법 제67조 규정에 의한 화재위험 경보 발령중의 불의 사용제한등에 관한 화재예방상 필요한 사항과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위치, 구조 및 관리의 기준등

제1절 불을 사용하는 설비 및 그 사용에 있어서 화재발생
의 우려가 있는 설비의 위치 구조 및 관리의 기준

제2조(열을 발생하는 설비 및 기구) ①열을 발생하는 설비 및 기구라 함은 고체, 액체, 기체의 연료와 전기, 화학반응등에 의한 열을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위치 및 구조의 공통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가연성 부분 및 가연성의 물품으로 부터 1미터 이상의 거리를 확보할 것
2. 상층부나 주위에 가연물이 접촉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
3. 가연성 가스 또는 증기가 발생하거나 체류할 우려가 없는 위치에 설치할 것
4. 실내에 설치할 경우에 있어서는 흙바닥 또는 금속이외의 불연재료로 된 바닥 위에 설치할 것. 다만, 불연재료로 된 받침대위에 설치할 경우에 있어서 방화상 유효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사용할 때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불연재료로 만들 것
6. 충격, 진동등으로 쉽게 전도, 균열 또는 파손이 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7. 표면온도가 과도하게 상승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8. 개방로 및 가연성 고체 또는 액체를 끓이는 화덕은 그 윗부분에 불연성 덮개 및 배기통을 옥외로 통하도록 설치하고 불티가 튀거나 불길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화상 유효하게 차폐할 것
9. 용융물을 안전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주위에 15센티미터 이상의 턱을 쌓아 안전장치를 할 것
10. 난방용 열풍로는 이동부분을 내열성의 금속재료로 만들고 가열된 공기의 온도가 급격히 이상 상승될 때에는 열풍의 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할 것
11. 열풍로에 부착된 풍도설비는 다음 각호에 의할 것
 - 가. 풍도 및 그 피복과 불박이들은 불연재료로 만들고 로에 근접된 풍도의 부분에 열풍조절장치(방화댐퍼)를 설치할 것
 - 나. 로로부터 “가”의 열풍 조절장치까지의 부분과 그로부터 2미터 이내의 부분은 가연물과 15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보유할 것. 다만, 두께 10센티미터 이상의 금속 이외의 불연재료로 피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환기구는 진개물의 혼입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12. 목재연료, 석탄, 그밖의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로 또는 화덕에는 뚜껑이 있는 불연성의 재처리 설비를 부설할 것. 다만, 불연재료 이외의 재료로 만든 바닥 위에 재처리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불연재료로 만든 받침대 위에 설치하거나 또는 방화상 유효한 낮은 면에 통기설비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경유, 중유 그 밖의 액체연료를 사용하여 열을 발생하는 설비 및 기구를 옥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벽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고 그 부속설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가. 연료탱크 사용중 연료가 새거나 비산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나. 연료탱크는 아궁이로부터 2미터 이상의 수평거리를 보유하거나 방화상 유효한 벽을 설치할 것. 다만, 유온이 현저하게 상승할 우려가 없는 연료탱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연료탱크 두께 1.2밀리미터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불연재료로 만들 것

라. 연료를 옥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바닥, 천장, 벽을 불연재료로 만들 것

마. 연료탱크의 받침대는 불연재료로 만들 것

바. 연료탱크에는 긴급할 때에 연료의 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유효한 개폐밸브를 탱크직근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에 매설한 연료탱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연료탱크 또는 비판에는 유효한 여과장치를 할 것

아. 연료를 예열하는 방식의 로 또는 화덕에는 연료탱크 또는 배관을 직화로 예열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과도의 예열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

14. 경유, 중유, 그 밖의 액체연료 또는 프로판가스, 석탄가스, 그 밖의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열을 발생하는 설비 및 기구에는 타다 남은 가스가 체류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가스가 새어 나오는 것을 탐지 할 수 있는 가스누설경보기의 설치 및 연소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배관은 금속관을 사용할 것. 다만, 연소장치·연료탱크등에 접속하는 부분으로 금속관을 사용하는 것이 구조상 또는 사용상 적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연료에 침투하지 않는 금속관 이외의 판을 사용할 수 있다.

15. 전기를 열원으로 열을 발생하는 설비 및 기구는 다음에 의할 것

가. 전선, 접속기구등은 내열성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여 단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로내의 온도가 과도하게 상승할 우려가 있는 것에는 과도한 온도상승을 자동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할 것

②열을 발생하는 설비 및 기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위를 항상 정리하고 청소하여야 하며 연소물질을 방치하지 말 것
2. 불안전 개소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하게 할 것
3. 연료의 성질등이 일상연소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은 사용중 감시인을 둘 것
4. 연료탱크 또는 연료용기는 차광, 전도 또는 충격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③용량 300,000kcal/h 이상의 로에서는 불연재료로 만든 벽, 기둥, 바닥 및 천장(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지붕)으로 구획되고 창 및 출입구등에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한 실내에 설치할 것. 다만, 로의 주위에 유효한 공간을 보유하는 등 방화상 지장이 없는 조치를 강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주방설비) ①조리를 목적으로 하여 사용하는 렌지, 화덕등의 설비의 관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주방설비에 부착된 배기덕트 및 후드(이하 “배기덕트등”이라 한다)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가. 배기덕트등은 내식성을 갖는 강판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내식성 및 강도를 갖는 불연재료로 만들것. 다만, 해당 주방 설비의 규모 및 사용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 화재예방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배기덕트 등의 접속은 후렌지 접속, 용접 등으로 하고, 기밀성이 있도록 할 것이다. 배기덕트 등은 건축물 등의 가연성 부분 및 가연성 물품과의 사이에 1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보유할 것. 다만 금속 이외의 불연재료로 유효하게 피복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배기덕트는 충분히 배기할 수 있는 구조로 할것

마. 배기덕트는 직접 옥외로 통하는 것으로 하고, 그밖의 용도의 덕트 등과 접속하지 말 것

바. 배기덕트는 가능한 한 구부러진 부분을 적도록 하고 내면을 평활하게 할 것

2. 유지를 포함한 증기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주방시설의 후드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가. 배기중에 포함된 유지 등의 부착성분을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그리스휠타, 그리고 엑스트랙터 등의 장치(이하 “그리스 제거장치”라 한다)를 설치할 것

다만, 배기덕트를 사용하지 않는 후드로부터 옥외로 직접 배기를 하는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그리스 제거장치는 내식성을 갖는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및 강도를 갖는 불연재료로 만들어진 것으로 할 것. 다만, 해당 주방설비의 규모 및 사용상황이 화재예방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배기덕트로의 화염전파를 방지하는 장치(방화댐퍼 또는 자동식 소화장치를 말하며 이하 “화염전파 방지 장치”라 한다)를 설치한다. 다만, 배기덕트를 사용하지 않는 후드로부터 옥외로 직접 배기를 하는 구조의 경우 또는 배기덕트의 길이나 해당 주방 설비의 규모 및 사용상황이 화재예방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후드, 그리스 제거장치 및 화염전파방지장치는 쉽게 청소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4. 후드 및 후드와 접촉하는 배기덕트내의 유지등을 청소하고 화재예방상 지장이 없도록 유지 관리 할 것

②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주방설비의 위치, 구조 및 관리의 기준에 대해서는 제2조(제1항 제8호에서 제11호까지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2조 제3항의 규정중 용량은 “해당주방설비의 용량과 동일 주방실내에 설치한 다른 주방설비의 용량의 합계”로 한다.

제4조(보일러) ①보일러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증기관은 가연성의 벽, 바닥, 반자등을 관통하는 부분 및 이들에 접촉하는 부분을 구조토, 석면 그 밖의 열을 막는 재료로 유효하게 피복할 것

2. 인화성의 열매(熱媒)를 사용하는 보일러에는 각 부분을 열매 또는 그 증기가 새지 아니하는 안전한 구조로 하고 열매 또는 증기를 안전한 장소에 유도하도록 설치할 것

②제1항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보일러의 위치 구조 및 관리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2조(제1항제8호 내지 제10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난로) ①난로(이동식의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와 위치 및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난로의 연통 및 연도설비는 다음에 의할 것

가. 구조 또는 재질(才質)에 따라 지지를 지선 또는 팔대(腕金具), 철물등으로 고정할 것

- 나. 연통의 옥상 돌출부에는 지붕면으로부터 수직거리를 0.6미터 이상으로 할 것
 - 다. 연통의 높이는 그 선단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내에 건축물의 처마가 있을 경우에는 그 처마로부터 0.6미터이상 높게 할 것
 - 라. 금속제 또는 석면제의 연통은 지붕속 반자속 바닥밑에 있는 부분을 금속 이외의 불연재료로 방화상 유효하게 피복할 것
 - 마. 금속제 또는 석면제의 연통은 목재 그 밖의 가연재료로부터 0.15미터 이상의 거리를 보유하여 설치할 것. 다만, 두께가 0.1미터 이상의 금속외에 불연재료로 피복한 부분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바. 가연성의 벽, 바닥, 반자등을 관통하는 부분은 구멍돌을 삽입하거나 단열재료로 유효하게 피복할 것
2. 목재연료, 석탄 그 밖의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난로에는 불연재료로 만든 재처리 설비를 부설할 것
- ②제1항에서 규정한 것이외에 난로의 위치 구조 및 관리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2조(제1항제8호 내지 제10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호텔, 시장, 백화점, 상가, 유흥음식점, 지하의 위생接客업, 지하식품接客업, 소극장, 노래연습장 등에서는 액체, 기체등의 연료를 사용하는 이동식 난로는 사용할 수 없다.
- 제6조(벽부난로) ①벽부난로의 위치 및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 1. 배면 및 측면과의 사이는 0.1미터이상의 간격을 보유할 것
 - 2. 제5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건조설비) ①건조설비의 위치 및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 1. 건조물품이 직접 열원과 접촉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 2. 실내의 온도가 과도하게 상승할 우려가 많은 건조설비에는 비상경보장치 또는 열원의 자동정지장치를 설치할 것
- ②제1항에서 규정한 것이외에 건조설비의 위치, 구조 및 관리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2조(제1항제8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사우나시설) ①사우나 시설에 설치하는 방열설비에는 사우나설비의 온도가 상승한 경우에 즉시 그 열원을 차단할 수 있는 수동 및 자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전항에 규정한 것이외에 사우나설비의 위치, 구조 및 관리의 기준에 관해서는 제2조(제1항제8호, 제9호 및 제3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간이탕비설비) ①간이탕비설비의 위치 및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한다.

1. 반자 또는 선반등의 가연성 부분으로부터 0.6미터 이상의 거리를 보유할 것. 다만, 이들의 부분으로부터 0.15미터이상 떨어진 불연성의 뚜껑 및 옥외로 통하는 배연통을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벽, 기둥등의 가연성 부분에 부설할 경우에는 간이탕비설비와 부설한 면과의 사이에 1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보유할 것
3. 간이탕비설비로부터 0.1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벽, 기둥등 가연성의 부분에는 단열성이 있는 불연재료로 피복할 것

②제1항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간이탕비설비의 위치, 구조 및 관리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2조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 내지 제7호 및 제14호와 제2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변전설비) ①옥내에 설치하는 변전설비(전출력 20킬로와트 이하의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위치, 구조 및 관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한다.

1. 물이 침입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없는 위치에 설치할 것
2. 가연성 또는 부식성의 증기 또는 가스가 발생하거나 체류할 우려가 없는 위치에 둘 것
3. 변전설비 (화재예방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구조를 갖는 큐피클식의 것을 제외한다)는 불연재료의 벽, 기둥, 바닥 및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지붕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구획되고 또한 창 및 출입구를 감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 한 실내에 설치할 것. 다만, 변전설비의 주위에 유효한 공간을 보유하는 등 방화상지장이 없는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큐비클식에서는 건축물등의 부분과 사이에 환기, 점검 및 정비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호의 기준의 거리를 보유할 것.

가. 전면 또는 조작면 : 1.0미터 이상

나. 점검면 : 0.6미터 이상

다. 환기면(전면, 조작면 또는 점검면이외의 면으로 환기구가 설치되는 면을 말한다) : 0.2미터 이상

5. 제3호의 벽등을 닥트, 케이블등이 관통하는 부분에는 틈사이를 인락크물, 몰탈, 방화셀재, 방화빠데등 내화충전재로 채우는 등 화재예방상 유효한 조치를 할 것
6. 강제환기 (1㎡당 1.0㎡/hr이상) 또는 자연환기 (개구부가 바닥면적의 16분의 1 내지 16분의 1.5) 설비를 할 것

7. 보기쉬운 곳에 변전설비라는 뜻을 표시할 것
8. 변전설비가 있는 실내에는 관계자 이외의 사람은 함부로 출입하게 하지 말것
9. 변전설비가 있는 실내는 항상 정리 정돈하고 청소하여야 하며 기름, 걸레 그밖의 가연물을 함부로 방치하지 말 것
10. 정격전류의 범위내에서 사용할 것
11. 필요에 따라 숙련자로 하여금 설비에 관한 각 부분의 점검 및 절연저항등의 측정시험을 하게하고 불안전 개소를 정비할 것

②옥외에 설치하는 변전설비(도로상에 설치하는 전기 사업자용의 것과 화재예방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구조를 갖는 큐피클식의 것을 제외한다)는 건축물로부터 3미터이상의 거리를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불연재료로 되거나 개구부가 없는 외벽에 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옥외에 설치하는 변전설비의 구조 및 관리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1항제5호 내지 제9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발전설비) ①옥내에 설치하는 내연기관에 의한 발전설비 (전출력 20킬로와트 이하의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위치, 구조 및 관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쉽게 점검할 수 있는 위치에 설비할 것
2. 진동방지 장치가 된 바닥위 또는 받침대 위에 설치할 것
3. 배기통은 방화상 유효한 구조로 할 것

②제1항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옥내에 설치하는 내연기관에 의한 발전설비의 위치, 구조 및 관리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2조제1항제13호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제13호의 “나” 목중 아궁이를 내연기관으로 본다.

제12조 (축전지설비) ①옥내에 설치하는 축전지설비 (정격용량과 전조(電槽)수의 적(積)

의 합계가 4,300AH·셀리만의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전조는 내산성의 바닥 또는 받침대 위에 전도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것외에 옥내에 설치하는 축전지설비의 위치, 구조 및 관리의 기준에 관해서는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8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네온관등 설비) ①네온관등 설비의 위치, 구조, 관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한다.

1. 점멸장치는 저압축을 쉽게 점검 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불연재료로 만든 덮개를 할 것. 다만, 무접점계전기등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변압기를 옥외의 장소에 설치할 경우에는 옥외용을 사용하여야 하고 도선 인출부가 하향이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빗물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효한 조치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지를 그 밖의 네온관등의 근접되는 부분에 사용되는 재료는 목재(난연합판등 제외) 또는 합성수지(불연성 및 난연성 제외)를 사용하지 말 것
4. 벽등을 관통하는 부분의 배관은 벽등에 고정할 것
5. 전원의 개폐기는 용이하게 조작하기 쉬운 위치에 있을 것

②네온관등 설비의 관리기준에 관해서는 제1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무대장치등의 전기설비) ①무대장치 또는 전시장식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기설비 또는 공사나 농사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전기설비(이하 “무대장치등의 전기설비”라 한다)의 위치 및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무대장치 또는 전시장식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기설비
 - 가. 전등은 가연물을 과열시킬 우려가 없는 위치에 설치할 것
 - 나. 전등의 충전부분은 노출시키지 말 것
 - 다. 전등 또는 배선은 너무 동요하거나 탈락하지 아니하도록 고정할 것
 - 라. 아크가 생기는 설비는 불연재료를 사용할 것
 - 마. 하나의 전선을 2이상의 분기회로에 사용하지 말 것
2. 공사나 농사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전기설비
 - 가. 분전반, 전동기등은 비·눈·토사등으로 인한 장애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나. 잔치등(殘値燈)설비의 전로에는 전용 개폐기를 설치하고 휴즈를 붙이는 등 자동차단의 장치를 할 것

②무대장치등의 전기설비의 관리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 및 기구의 안전관리기준등

제15조(방전가공기) ①방전가공기(가공액으로 법 제2조제4호에 규정하는 위험물을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가공탱크내의 방전가공부분 이외의 가공액 온도가 설정된 온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자동적으로 가공을 정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2. 가공액의 액면 높이가 방전가공부분으로부터 액면까지 사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간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가공을 정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3. 공구전극과 가공대상물과의 사이의 탄화생성물의 발생 성장등에 의한 이상을 검출한 경우에 있어서는 자동적으로 가공을 정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4. 가공액에 착화한 경우에 있어서는 자동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②방전가공기의 원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인화점 70도 미만의 가공액을 사용하지 말 것
2. 가공액을 피가공물에 분사하는 등 화재발생 위험이 있는 방법에 의한 가공을 행하지 말 것
3. 공구전극을 확실하게 설치하여 이상방전을 방지할 것
4. 필요한 점검·정비를 실시하여 화재예방상 유효하게 유지할 것

③전2항에서 규정하는 것이외에 방전가공기의 위치, 구조 및 관리의 기준에 대하여는 전조(제2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수소가스를 충전하는 기구) 수소가스를 충전하는 기구의 안전관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연통 그 밖의 화기를 사용하는 시설의 부근에서 취급 계양하거나 계류하게 하지말 것

2. 건축물의 옥상에 계양하지 말 것. 다만, 지붕이 불연재료로 된 평지붕으로서 그 최소 넓이가 기구직경 2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기구의 용적은 15세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관측 또는 실험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기구의 계양각도가 지표면에 대하여 45도 이하로 되는 강풍시에는 계양하지 말 것
 5. 수소가스를 충전하거나 방출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할 것
 - 가. 통풍이 잘되는 옥외의 장소에서 행할 것
 - 나. 조작자 이외의 자가 접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다. 전식을 부설한 경우에는 전원을 차단하고 행할 것
 - 라. 마찰 또는 충격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 것
 - 마. 수소가스를 충전할 때에는 기구안에 수소가스 또는 공기가 남아있지 아니한가를 확인한 후 감압기를 사용하여 행할 것
 6. 수소가스가 용량 90퍼센트 이하로 줄었을 때에는 대체 충전할 것
 7. 계양중 또는 계류중인 때에는 감시인을 배치할 것. 다만, 건축물의 옥상 기타 공중이 출입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양하거나 계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다수자가 통행 또는 집합하는 장소에서 운반 그 밖의 취급을 행하지 말 것
- 제17조(불티가 생기는 설비) 그라비아인쇄기고무, 스프렛타, 기모기, 솜틀기계 그밖의 그 조작에 있어 불티가 생기거나 가연성의 증기나 분진이 비산되는 설비의 위치, 구조 및 관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벽,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천정) 및 바닥에 불티가 생기는 설비에 면하는 부분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만든 실내에 위치할 것
 2. 정전기에 의하여 불티가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는 조치를 할 것
 3. 가연성의 증기 또는 분진을 유효하게 제거하는 환기장치를 설치할 것
 4. 불티가 생기는 설비가 있는 실내에서는 항상 정리하고 청소하여야 하며 합부로 화기를 사용하지 말 것

제18조 (화학실험등) 화학실험등에 있어서 인화성의 증기를 발생하는 물품을 가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불티가 생기거나 불길 이 일어날 우려가 있는 연료를 사용할 때에는 유효한 인화 방지조치를 할 것
2. 급격한 온도 상승으로 인하여 가열하는 물품이 넘치지 아니하도록 열원을 조절할 것
3. 실험시는 반드시 전문가 입회하에 실시할 것
4. 인화성이 강하거나 충격등에 민감한 물품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할 것
5. 그 밖에 화재예방상 안전한 조치를 할 것

제19조(가스 또는 전기에 의한 용접작업등) ①인화성 또는 폭발성의 물품 그 밖의 가연물의 부근에서는 다음에 계기하는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스나 전기에 의한 용접작업
2. 그라인더등 불티가 생기는 작업
3. 토치램프등에 의한 가열작업
4. 리베트 작업

②가연성의 증기 또는 가스를 현저하게 발생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작업, 폭발성 또는 가연성의 분진을 현저하게 발생하는 작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환기, 제진, 화기의 제한, 소화용구의 준비, 작업후의 점검 그 밖의 화재예방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 (시설공정등 안전관리) ①산업시설의 공정에서 화재발생우려가 있는 설비 및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침냉·분무 및 분체도장 공정
2. 디핑 및 코팅 공정
3. 분쇄·사출 및 성형공정
4. 용융염담금 공정 및 금속작업공정
5. 용제추출 공정 및 식품제조 공정
6. 농약제조 공정 및 저장창고
7. 곡물저장 및 냉장저장 공정
8. 그 밖의 화재발생 우려 설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공정시설에 대하여는 대전직할시 실정에 맞도록 정하여 화재예방을 위한 자체점검시 활용토록 지도 권장하여야 한다.

제3절 화기사용에 관한 제한

제21조(흡연등) ①다음 각호의 장소로서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는 흡연 또는 불의 사용 그 밖에 화재예방상 위험한 물품을 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방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에 규정한 관람집회시설의 무대 또는 객석
2. “영” 별표1에 계기한 시장의 매장 또는 전시부분
3.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의 내부 또는 주위
4. 제1호 및 제2호에 계기하는 것외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인명피해의 위험이 있는 장소

②제1항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는 객석의 전면 기타 보기 쉬운 곳에 “금연”, “화기엄금” 또는 “위험물품 반입금지” 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 표지의 색은 바탕을 적색, 문자를 백색으로 할것.

③제1항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장소가 있는 소방대상물(동향 제3호에 계기하는 장소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각층마다 흡연장소를 마련하고 필요한 수의 재떨이를 두어야 한다.

④제1항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장소의 관계자는 당해 장소에서 흡연, 불의 사용 또는 당해 장소에 화재예방상 위험한 물품을 반입하는 사람을 제지하여야 한다.

제22조(분화) ①인화성 또는 폭발성의 물품 그 밖의 가연물의 부근에서 분화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연소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분화할 경우에는 소화준비 그 밖의 화재예방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완구용 연화) ①완구용 연화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완구용 연화를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는 뚜껑이 있는 불연성의 용기에 넣거나 방염처리된 것으로 피복되어야 하며 불꽃, 불티 또는 고온체와 접근을 피하여야 한다.

제4절 화재위험 경보 발령중의 불의 사용제한

제24조(화재위험 경보 발령중의 불의 사용제한) 화재에 관한 경보가 발령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불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산림 평야등에서 불의 사용
2. 연화의 사용
3. 옥외에서의 불장난 또는 분화
4. 인화성 또는 폭발성의 물질 그밖의 가연물의 부근에서 흡연 및 불의 사용
5. 잔화(담배꽂초 포함), 재등의 방치
6. 창문등을 개방한채로 옥내에서 하는 불의 사용
7. 기타 화재 예방상 특히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불의 사용

제3장 위험물 또는 특수가연물의 저장 취급상의 기준

제1절 주택, 농예용 및 어패류 양식장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위험물의 저장취급상의 기준

제25조 (주택의 난방용 위험물의 저장·취급 기준) ①소방법 제16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주택의 난방용 위험물의 저장·취급상의 공통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고자 할 때에는 충수압 시험을 받은 옥외탱크, 옥내탱크 또는 지하탱크 저장 시설로 설치 되어야 한다
2. 저장탱크는 두께 3.2 밀리미터 이상의 강철판으로 틈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최대 상용 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압력탱크를 제외한 탱크에 있어서는 매 평방센티 미터에 대하여 0.7키로 그램의 압력으로 각각 10분간의 수압시험을 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않아야 한다

3. 위험물을 저장 취급할 때에는 보기 쉬운곳에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위험물 제조소등 시설의 기준등에 관한(이하 “소방기술 기준규칙” 이라 한다) 규칙 제150조에 규정한 표지 및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위험물 저장탱크의 외면에는 방청도장을 하여야 한다.
 5. 위험물 저장탱크는 이상 압력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위험물 저장탱크에는 위험물의 저장량을 자동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장치 및 계량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주입구는 화재예방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8. 지하탱크의 개폐 발브는 내수성이 있는 금속 재료로 하고 위험물이 새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하며, 배관은 금속관, 도관등 내연성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 ②옥내탱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 1항 규정외에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
여야 한다.
1. 탱크 전용실은 단층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층건축물이 아닌 건축 물에는 그 건물의 1층 또는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2. 옥내 저장탱크는 탱크 전용실의 벽과의 사이 및 탱크를 2이상 설치할 때에는 탱크 상호간의 거리는 0.5미터 이상 간격을 보유하여야 한다.
 3. 탱크 전용실의 벽, 기둥, 바닥은 내화 구조로하고 보와 서까래는 불연재료로 하여야하며 관계자가 점검에 필요한 간격을 보유하여야 한다.
 4. 탱크 전용실의 지붕은 불연재료로 만들어야 하고 반자를 설치하여서는 안된 다.
 5. 탱크 전용실의 창 및 출입구는 자동폐쇄식 갑종 방화문 또는 을종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6. 탱크 전용실 출입구의 턱의 높이는 바닥으로 부터 0.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7. 탱크 전용실의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못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적당하게 경사를 지게하고 그 최저부에 저유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③지하저장탱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외에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1. 지하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된 탱크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4류 위험 물의 지하저장탱크가 소방기술 기준규칙 제200조 제1항 각호 규정에 의한 시 설에 적합할때에는 당해 탱크를 탱크실에 설치하지 아니할수있다.

2. 지하저장탱크는 그 윗부분이 지면으로부터 0.6미터 이상의 깊이가 되도록 매설하여야 한다.
3. 지하저장탱크를 2개이상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상호간에 0.5미터 이상의 간격을 보유하여야 한다.
4. 지하저장탱크의 배관은 당해 탱크의 윗 부분에 장치하여야 한다.
5. 지하탱크와 탱크실의 내벽과의 사이는 0.1미터 이상 간격을 보유하고 그 탱크의 주변에는 건조된 모래로 채워야 한다.

제26조(농예용 또는 어패류 양식장 난방시설에 쓰이는 위험물 저장소) ①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예용 또는 어패류 양식장 난방시설에 쓰이는 지정수량 10배 미만의 위험물저장소의 위치, 구조설비 및 저장, 취급에 관한 기준은 제2항 내지 제10항과 같다.

②농예용 어패류 양식장용 난방시설에 쓰이는 위험물은 소방법 시행령 별표3의 제4류 위험물중 제2석유류, 제3석유류 제4석유류에 한한다.

③위험물 저장소는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또는 지하탱크 저장소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위험물 저장소의 위치, 구조, 설비에 관한 공통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위험물 저장소에는 보기쉬운 곳에 위험물 저장소라는 표지를 설치하고 화재예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게시판을 소방기술 기준 규칙 제150조의 규정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위험물 저장소에는 능력단위 3단위 이상 소화기를 2개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3. 옥내탱크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또는 지하탱크 저장소의 탱크 (이하 이조에서 “탱크”라 한다)는 압력 탱크가 아니어야 한다.
4. 탱크는 두께 3.2밀리미터 이상의 강철판으로 틈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하고 옥내탱크 저장소, 옥외탱크 저장소에 있어서는 충수시험 (물외의 적당한 액체를 채우는 시험을 포함한다)을, 지하탱크 저장소에 있어서는 1제곱센티미터에 대하여 0.7킬로그램의 압력으로 10분간의 수압시험을 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탱크의 외면에는 탱크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장을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6. 탱크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통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 가. 통기관의 위쪽 끝은 수평면에 대하여 아래로 45도 이상 구부러 빗물등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할것

나. 가는 눈의 구리로 된 망으로 인화방지 장치를 할 것

다. 통기관의 위쪽 끝은 건축물의 창 또는 출입구 등의 개구부로부터 1미터 이상 떨어진 옥외에 설치하되,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의 높이로 할 것

7. 탱크에는 위험물의 양이 자동으로 측정될 수 있도록 부유식 계량장치 또는 유리 게이지 (내유성 합성수지로 된 것을 포함한다)등의 계량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화재예방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할 것

나. 급유호스 또는 급유관과 결합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위험물이 새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다. 주입구에는 밸브 또는 뚜껑을 설치할 것

9. 배관은 강관 그밖의 이와 유사한 금속성의 것으로 설치하되, 외면의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옥내저장소의 위치, 구조, 설비는 제4항 제 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의하는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옥내저장소는 소방기술 기준 규칙 제148조의 규정에 준하여 다른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 다만, 각 목의 기준에 해당하는 옥내저장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저장창고의 벽, 기둥, 바닥, 보 및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것

나. 저장창고의 출입구에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 저장창고에 창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옥내저장소의 주위에는 공지를 두되, 공지의 너비는 지정수량의 5배 미만의 경우에는 0.5미터이상, 지정수량의 5배 이상인 경우에는 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옥내저장소의 건축물은 소방기술기준 규칙 제169조 제2항 내지 제6항, 제8항의 규정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⑥옥외저장소의 위치, 구조, 설비는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의하는 것 외에 설치장소 및 보유공지에 관한 기준은 소방기술기준 규칙 제227조, 제228조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⑦옥내탱크 저장소의 위치, 구조, 설비는 제4항의 기준에 의하는 것 외에 탱크전용실, 탱크와 탱크전용실의 벽 및 탱크 상호간의 거리, 탱크 전용실의 구조는 제25조의 제2항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⑧ 옥외탱크 저장소의 위치, 구조, 설비는 제4항의 기준에 의하는 것외에 안전거리, 보유공지, 방유제에 관한 기준은 소방기술 기준 규칙 제148조, 제176조, 제190조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⑨ 지하탱크 저장소의 위치, 구조, 설비는 제4항의 기준에 의하는 것외에 탱크의 위치, 매설배관, 탱크와 탱크실의 벽 및 탱크 상호간의 거리등은 제26조 제3항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⑩ 위험물의 저장, 취급에 관한 기준은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 (위험물 임시 저장, 취급기준) ①법 제15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한 위험물 임시저장, 취급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위험물의 임시저장, 취급대상은 공사장, 수출입 화물의 하역장소등과 같이 임시적이라고 인정 될 경우에 한 한다.
 - 2. 저장시설은 옥외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또는 옥내탱크 저장소로 한다.
 - 3. 옥외저장소에 저장, 취급하는 위험물은 소방기술기준규칙 별표16의 운반용기와 수납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4. 위험물 저장시설 주위에는 3미터 이상의 공지를 확보하고 높이 1.5미터 이상의 방화벽 또는 철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 5. 위험물저장 취급시설 주위에는 소방기술기준 규칙 제150조에 규정한 표지 및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6. 위험물 임시저장, 취급시설에는 능력 단위 3단위 이상의 적응 소화기를 2대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 ② 위험물 임시저장, 취급시설의 설치자는 당해 위험물 안전관리를 위해 감독적 직위에 있는 자를 안전 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저장, 취급시설의 기준은 소방기술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 기준 및 신고

제28조 (공통기준) ①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수량미만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경우의 공통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위험물을 저장 취급한다는 취지 및 위험물의 품명과 최대수량을 기재한 표지를 설치할 것

2. 위험물을 가열하거나 냉각하는 설비 또는 위험물의 취급에 따라 온도변화가 일어나는 설비는 온도측정 장치를 설치할 것
3. 위험물을 가열 또는 건조하는 설비는 직화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다만, 당해 설비가 방화상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였을 때 또는 당해 설비에 화재를 방지 할 수 있는 부대설비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위험물을 가압 또는 취급하는 설비에는 유효압력계 및 안전장치를 할 것
5. 인화성 열매체를 사용하는 설비에는 각 부분을 열매체 또는 증기가 새지 않는 구조로 하고 당해 설비에 설치하는 안전장치는 열매체 또는 증기를 화재 예방상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는 구조로 할 것
6. 전기설비는 전기공작물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를 것
7. 위험물을 취급함에 있어 정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당해 설비에 축적된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8. 위험물을 취급하는 배관은 금속관 그밖의 예열성을 가진 관을 사용하고, 배관외면의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9.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는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차광 또는 환기를 할 것
10.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적당한 온도, 압력 및 습도를 유지하고 취급할 것
11. 위험물의 변질 이물의 혼입 등으로 당해 위험물의 위험성이 증대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것
12. 위험물이 남아있거나 남아 있을 우려가 있는 설비, 기계기구, 용기 등을 수리할 경우에는 안전한 장소에서 위험물을 완전히 제거시킨 후에 행할 것
13. 가연성의 액체, 증기, 가스가 새거나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가연성의 분진이 현저하게 떠돌아다닐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전선과 전기기구를 완전히 접촉시키고 불티가 발하는 기계기구, 공구 등을 사용하지 말 것
14. 위험물을 보호액 중에 보존할 경우에는 당해 위험물이 보호액중에서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5. 접촉 또는 혼합으로 발화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과 위험물 이외의 물품은 상호 근접하여 두지 말 것. 다만, 접촉 또는 혼합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6. 위험물을 용기에 수납 또는 환적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규제에 관한 기술기준규칙 별표16에 계기한 운반 용기와 수납방법에 적합하도록 행할 것. 다만, 화재 예방상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겹쳐서 저장할 경우에는 높이 3미터 (제4류 위험물중 제3석유류 및 제4석유류를 수납한 용기만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4미터)를 초과하지 말 것

18. 위험물을 가열 또는 건조할 때에는 위험물의 온도가 국부적으로 상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행할 것

19. 위험물의 환적은 방화상 안전한 장소에서 행할 것

20. 분무, 도장작업은 방화상 유효한 격벽으로 구획된 장소 등 안전한 장소에서 행할 것

21. 열처리 작업은 위험물이 위험한 온도에 달하지 아니하도록 행할 것

22. 염색 또는 세탁작업은 가연성 증기의 환기를 잘되게 하고 폐유는 안전하게 처리할 것

23. 버너로 위험물을 소비할 때에는 버너에 역화를 방지하고 위험물이 넘쳐 흐르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위험물을 옥외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의 기술상 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장소의 주의에는 폭 2미터이상(탱크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1미터 이상)의 공지를 확보하거나 방화상 유효한 벽을 설치할 것.
다만,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 방화구조의 벽 또는 불연재료로 만든 벽에 면하였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액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 (탱크를 제외한다)에는 그 직하의 지반면 주위에 턱을 설치하거나 위험물의 유출방지에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고, 당해 지반면은 콘크리트 그밖의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재료로 피복하고 적당한 경사 및 저유설비 또는 유분리장치를 설치할 것

3. 위험물을 수납하는 용기를 가대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대를 불연재로 견고하게 만드는 동시에 높이 6미터를 초과하여 용기를 저장하지 말 것

③ 위험물을 옥내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의 기술상 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벽, 기둥, 바닥 및 천정은 불연재로 만들 것

2. 창 및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 설치 할 것

3. 액상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않는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 및 저유설비를 설치할 것
 4. 가대를 설치 할 경우에는 가대를 불연재료로 견고하게 만들 것
 5.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기 위해 필요한 채광, 조명 및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6. 가연성 증기 또는 미분의 발생이 현저한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증기 등을 배출하는 설비를 만들 것
- ④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 (지하탱크 및 이동탱크를 제외한다.)의 기술상 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두께 2밀리미터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금속판으로 틈이 없도록 만들 것이며 쉽게 파손 또는 새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2. 외면에는 쉽게 녹이 슬지 아니하는 조치를 할 것
 3.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유효한 안전장치를 압력탱크 이외의 탱크에 있어서는 유효한 통기관을 설치할 것
 4. 인화의 우려가 있는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통기관에 인화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강구 할 것
 5. 보기 쉬운 위치에 위험물의 량을 표시하는 장치(유리관 등을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설치할 것
 6. 주입구는 화재예방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밸브 또는 뚜껑을 설치할 것
 7. 탱크의 배관에는 직근에서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개폐밸브를 설치할 것
 8. 액체 위험물 탱크의 주위에는 위험물이 새는 경우에는 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효한 조치를 할 것
 9. 옥외에 설치한 것으로 탱크 밑판을 지반면에 접하여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밑판 외면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 ⑤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지하탱크의 기술상 기준은 전조 제2호내지 제4호와 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하는것 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지하에 매설하는 탱크에 있어서는 지반면 밑에 콘크리트로 만든 탱크실에 설치하거나 아스팔트 루핑, 아스팔트 프라이마, 몰탈 등을 가지고 유효하게 피복할 것.
 2. 자동차 등에 의해 상부에서 하중을 받을 우려가 있는 탱크는 당해 탱크에 직접 하중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뚜껑을 만들 것

3. 탱크는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되어 있을 것
4. 위험물의 량을 자동적으로 표시하는 장치 또는 계량구를 만들 것
5. 탱크배관은 당해 탱크의 상부에 설치할 것
6. 탱크주위에는 당해탱크에서 액체위험물의 누설을 검사할 수 있는 관을 2개소 이상 적당한 위치에 설치할 것

제29조 (품명을 달리하는 위험물) 품명(류)을 달리하는 2이상의 위험물을 동일한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에 관계되는 위험물의 품명마다의 수량을 각각 지정수량 5분의 1의 수량으로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1이상 될 때에는 당해 장소는 지정수량 5분의 1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30조 (소량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의 신고) ① 영 별표 3의 지정수량의 5분지 1이상 지정수량미만 (일반주택, 기숙사, 의료원, 노인복지시설 및 농예용 유류취급장소등은 제외한다)의 위험물과 지정수량이상 지정수량 10배미만의 농예용 및 어패류 양식장용 난방을 위험물, 영 별표 4에서 정한 수량의 5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고자 하는자는 미리 그 취지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용도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7일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고필증(별지 제3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한 시설을 양수한 자는 당해시설에 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 3절 특수가연물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

제31조 (특수가연물 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 특수가연물(영 별표 4에서 정한 특수가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특수 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 및 최대수량, 화기취급금지 표지를 할것
2. 특수 가연물을 집적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집적장소의 면적 50평방미터 이하마다 구분하여 집적하고 상호 1미터 이상의 간격을 보유할 것. 다만, 화재예방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집적장소의 면적 200평방미터 이하마다 구분해서 집적할 수 있다

제 4 장 피난 및 방화구획 관리

제 1절 피난시설의 관리

제32조 (공연장의 관람석) 공중이 관람 또는 청문하는 공연장 (운동장은 제외한다)에는 관람석 및 통로를 공연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설치해야 한다.

제33조 (유홍접객업소등의 객석)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식품접객업중 유홍접객업소와 대중음식점으로서 당해층 객실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객실내에는 유효폭 1.5미터 이상의 통로를 보유하여야 하며 가장 먼 객석에서 그 1에 도달할 수 있는 객석수가 6이내이어야 한다

제34조 (판매시설의 통로) ① 도·소매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는 시장, 대행점, 대규모 소매점, 도매센터의 판매장 내의 통로는 그 유효폭이 1.2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판매장에서 옥외로 통하는 직통계단 (피난층에서는 옥외출구) 에 이르는 유효폭 1.5미터의 피난통로를 1이상 설치하고, 판매장 바닥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 있어서는 유효폭 1.2미터 이상의 보조피난통로를 추가로 설치 해야한다.

제35조 (전시장의 피난통로) 전시장 내에 설치하는 통로는 그 유효폭이 1.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제36조 (피난시설의 관리) 영 별표 1에 계기한 소방대상물의 피난구, 목도, 계단, 피난통로 등의 피난시설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상 유효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 피난시설에는 피난에 방해가 되는 시설을 설치한다든가 또는 장애물을 방치하지말 것
2. 피난시설의 바닥면은 피난시에 넘어지거나 미끄러질 염려가 없도록 유지관리 할 것
3. 피난구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개폐방향은 실내에서 외부쪽으로 하여야 하고 또한 문의 개방시에 복도, 계단 등의 피난통로를 차단하거나 유효폭을 좁히지 않게 할 것
4. 피난구에 설치하는 출입문은 열쇠잠금장치로 잠구어 두지 말고 항상 피난가능 한 상태로 유지관리 할 것

제 2절 방화구획관리 및 적용의 준용

제37조 (방화구획 관리) 영 별표 1에 계기한 소방대상물의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상 유효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 방화문 및 자동방화샷타는 화재시 항상 자동폐쇄 가능 하도록 그 기능을 유지하고 폐쇄시에 장애물을 두지 말 것
2. 방화문 및 자동방화샷타에 근접하여 연소의 매개가 되는 가연물을 두지 말 것
3.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파이프, 덕트 등의 설비의 관통부 주위를 불연재료로 된 내화 충전재로 충전할 것
4. 전호의 덕트에 설치한 방화댐퍼는 방화구획 벽체에 고정설치하고 댐퍼를 확인 할 수 있는 점검구를 직근에 설치할 것

제38조 (일시적으로 공연장 또는 전시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소방대상물의 준용) 체육관, 강당 등의 시설을 일시적으로 공연장, 전시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제32조, 제35조,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5장 보 칙

제39조 (화재라고 오인할 만한 연기를 발하는 행위등의 신고)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취지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별지 제4호,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 (전화 신고를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

1. 화재라고 오인할 만한 연기 또는 화재를 발할 우려가 있는 행위
2. 연화 (연구용 연화는 제외한다)의 취급 및 사용
3. 극장등 이외의 건축물 그밖의 공작물에 있어서의 연극, 영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집회의 개최
4. 수도의 단수 또는 감수

제40조 (화재예방의 조치)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5조 내지 제20조 및 제32조 내지 제35조에 관한 사항은 지도·권장한다.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외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1차에 한하여 이를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41조 (소방의날 행사) 소방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의 날 의식 및 부수되는 행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방행정에 관련한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
 2. 불조심강조의 달 설정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사에 있어서 매년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정하고 그날이 법정 공휴일이 되는 경우에 그 전일로하고 행사의 성격상 기일을 요하는 사항은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행할 수 있다.

제42조 (위 임)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 정한다

제 6장 별 칙

제43조 (벌 칙) ①제28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2조 내지 제14조, 제21조 내지 제27조 및 제30조 내지 제39조(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소 량 위 험 물) 신 고 서
(특수가연물취급)

소방서장	귀하	년	월	일
신고자	주소	전화		번
	성명		인	
저장취급장소	지명지번			
	명칭			
류별품명 및 최대수량	류별품명	최대저장량	1일최대취급수량	
저장 또는 취급방법의 개요				
저장 또는 취급장소의 위치 및 설비의 개요				
소방용설비등의 개요				
저장취급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				
※ 접 수		※ 경 유		
<p>“비 고”</p> <p>1.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대표자 성명, 주된 사무실의 소재지를 기입할 것</p> <p>2. ※란은 기입하지 말것.</p> <p>3. 저장 취급장소의 안내도를 첨부할 것</p>				

190mm × 268mm(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 2호서식)

위험물 (주택난방용) 취급소 용도폐지신고서 소 량				처리기간		
				2 일		
신고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 번호		③생년 월일	
	④주 소					
	⑤상 호					
⑥설치허가년월일 및 허가번호						
⑦폐업년월일						
⑧폐업사유						
<p>위와 같이 폐업하였기 관계서류(위험물 제조소등 설치허가증)를 첨부 하여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고인 ㉠</p> <p>소방서장 귀하</p>						
※ 구비서류					수수료	
1. 설치허가증					원	

1501-8-3A-1
1971. 11. 승인

190mm × 268mm(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 4 호서식)

분 화 (焚 火) 신 고 서

소방서장 신고자		귀하 주소 성명	년 월 일 전화 ①
예 정 일 시	자 치		
장 소			
연소물품및			
수 량			
목 적			
기타필요한 사 항			
※ 접 수		※ 경 유	
<p>“비 고”</p> <p>1.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대표자 성명 주된 사무실의 소재지를 기입한다.</p> <p>2. 기타 필요한 사항란은 소화설비의 개요 기타 참고사항을 기입할 것.</p> <p>3. ※란은 기입하지 말 것.</p>			

190mm×268mm(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 5 호서식)

연 화 (煙 火) 신 고 서

소방서장 신고자		귀하 주소 성명	년 월 일 전화 ①
예 정 일 시	자 지		
장 소			
주 위 상 황			
연 화 의 종 류 및 수 량			
목 적			
기 타 필 요 한 사 항			
책 임 자 성 명			
※ 접 수		※ 경 유	
<p>“비 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대표자 성명 주된 사무실의 소재지를 기입할 것. 2. ※란은 기입하지 말 것. 3. 기타 필요한 사항란에는 소방설비의 개요 기타 참고사항을 기입할 것. 4. 장소의 약도를 첨부할 것. 			

190mm×268mm(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 6 호서식)

연 예 개 최 신 고 서

소방서장		귀하		년 월 일	
신고자		주소		전화	
		성명		①	
소 방	소재지				
대 상 물	명 칭	본래의 용도			
사용개소	위 치	면 적		객 석 구 조	
		m ²			
	소방용 설비개요				
사용목적					
사용기간			개최시간		
수용인원	피난유도 및 소화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인원				
방화관리자 성명		영 사	성 명		
		기술자	면허번호		
기타필요한 사항					
※ 접 수			※ 경 유		
<p>“비 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일 경우에는 명칭 대표자 성명 주된 사무실의 소재지 2. ※란은 기입하지 말 것. 3. 사용할 소방대상물의 도면을 첨부할 것. 					

190mm × 268mm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7 호서식)

수 도 단 감 수 신 고 통 보 서

소방서장	귀 하 신교자 성 명 주 소	년 월 일 인 (전화)
단수에정일시		
단수지역및장소		
공사장소		
사 유		
현장책임자성명		
※ 점 수 란	※ 경 과 란	
<p>“비 고”</p> <p>1. 법인 또는 조합에 있어서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입할 것.</p> <p>2. ※란은 기입하지 말 것.</p> <p>3. 단·감수구역의 약도를 첨부할 것.</p>		

190mm×268mm(신문용지 54g/m²)